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3
----------	------

발의연월일 : 2016. 8. 25.

발의자 : 박광온 · 김해영 · 추미애
권칠승 · 문미옥 · 이찬열
백혜련 · 김현미 · 신경민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예산안에 이러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과 사유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결산심사는 단년도 사업 및 정부 재정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예산과 달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 신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p> <p>1. ~ 8. (생 략) <u><신 설></u></p> <p>9. ~ 12.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u>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u></p> <p>9. ~ 1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